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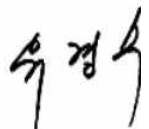
1.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사유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취소요건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김은혜
	담당부서 (과)	항공안전정책과		직급	항공주사
	국장	유경수		연락처	044-201-4249
	과장	곽영필		이메일	flyeune@mail.g o.kr

2026. 10. 02.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유경수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사유		
	2.규제조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 제34조의 4		
	3.위임법령	항공안전법 제20조제9항제4호라목 제22조제7항제4호라목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10.12.~2026.10.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경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위반사항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중요 사항을 규정할 필요 * 「항공안전법」 '26.5.12. 개정 및 '26.11.13. 시행 ○ (제도 도입배경) 현행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은 형식·제작증명 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기 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의무 사항 위반에 대해 각종 증명 등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데 반해 형식·제작증명 등에 대해서는 취소·정지 근거가 미비 － 이에 따라 현행 「항공안전법」의 다른 조항(제48조의2, 제86조, 제91조)과 같이 제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규정을 보완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9권(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서는 국가가 항공기,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설계(형식증명)나 제조(제작증명)에 책임이 있는 조직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7.규제내용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위반사항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중요 사항을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 < 참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 >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보고 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5.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지표의 선정, 경향성 모니터링,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td><td>1개 사(한국항공우주산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1개 사(한국항공우주산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1개 사(한국항공우주산업)								
	9.규제목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규정을 보완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동 규제사무 신설을 통해 피규제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비용은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5조의3(형식증명 등의 취소 등의 기준) 법 제20조제9항제4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보고 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5.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지표의 선정, 경향성 모니터링,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중에 관한 사항
<u><신 설></u>	제34조의4(제작증명의 취소 등의 기준) 법 제22조제7항제4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5조의3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 형식증명이란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을 설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

* 제작증명이란 형식증명 등을 받은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항공안전법」 '26.5.12. 개정 및 '26.11.13. 시행

< 위임법령 : 「항공안전법」 제20조제9항제4호라목 및 제22조제7항제4호라목 >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 ⑧ (생략)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2조(제작증명) ① ~ ⑥ (생략)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위반사항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중요 사항을 규정할 필요

- (제도 도입배경) 현행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은 형식·제작증명 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기 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다만, 부가형식증명 보유자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8. (생략)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의무 사항 위반에 대해 각종 증명 등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데 반해 형식·제작증명 등에 대해서는 취소·정지 근거가 미비
- 이에 따라, 현행 「항공안전법」의 다른 조항(제48조의2, 제86조, 제91조)과 같이 제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규정을 보완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9권(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서는 국가가 항공기,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설계(형식증명)나 제조(제작증명)에 책임이 있는 조직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제도 유지
	내용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 등 기준 미도입
규제대안1	대안명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 등 기준 도입
	내용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위반사항 중 승인 받지 않고 변경한 중요사항에 대해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변동 없음	국제기준 미충족
규제대안1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해당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3. 규제목표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규정을 보완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위반사항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중요사항을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음

〈 참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 〉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5.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지표의 선정, 경향성 모니터링,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일치	

○ 타법사례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위반사항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중요사항을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작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피규제자(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을 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이번 규제사무 신설에 따라 연계·투입되는 재정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형식·제작증명 등의 취소·정지 사유 신설은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신설되는 규제사무의 경우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내의 다른 조항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피규제자의 이행 가능성 또한 문제가 없으며,
 -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해당 의무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제도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행제도 유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취소요건 등		
	2.규제조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 2별표20의3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경위)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운용을 하였을 경우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효력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효력정지에 대한 세부기준 등 마련 필요 * 「항공안전법」 ’ 25.5.27. 개정 및 ’ 25.11.28. 시행 ○ (제도 도입배경) ICAO 국제기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상 문제가 확인되면 국가가 행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까지 취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부적절하게 이행한 것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7.규제내용	○ 현행규제내용 : 현행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승인 또는 이행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자체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었음 － 다만, 현행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2조는 부적절한 SMS 이행에 대한 조치를 서비스제공자별 기존 법령의 처분 조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처분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신설(강화)규제내용 : 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승인을 받았거나 이행을 한 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효력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2.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 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5.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6.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9.규제목표	○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및 국제기준에 따라 SMS 이행상 문제가 확인되면 국가가 집행 조치(enforcement measures)까지 취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3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이란 제1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신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3]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33조의2제2항 관련)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 문</th><th colspan="6">해당 분야별</th></tr><tr><th colspan="6">항공안전관리시스템 처분내용</th></tr><tr><td></td><td></td><td>형식·제한형식·제작증명</td><td>지정된전문교육기관</td><td>항공교통업무증명</td><td>운항중명</td><td>정비조직인증</td><td>공항운행증명</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해당 분야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처분내용								형식·제한형식·제작증명	지정된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중명	정비조직인증	공항운행증명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해당 분야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처분내용																					
		형식·제한형식·제작증명	지정된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중명	정비조직인증	공항운행증명																
	<table><tr><td>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 받은 경우</td><td>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td><td colspan="6">승인 취소</td></tr></table>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	승인 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	승인 취소																					
	<table><tr><td>나. 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td><td>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td><td>형식·제한형식</td><td>지정된전문교육</td><td>항공교통업무증명</td><td>운항중명</td><td>정비조직인증</td><td>공항운행증명</td></tr></table>	나. 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	형식·제한형식	지정된전문교육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중명	정비조직인증	공항운행증명														
나. 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	형식·제한형식	지정된전문교육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중명	정비조직인증	공항운행증명																

현행	개정안						
		· 제 작 중 명	기 관	명			
	1) <u>항공안전관 리시스템 등을 승인 받은 내용 과 다르게 운용한 경 우</u>	효 력 정 지 7일	효 력 정 지 10 일	효 력 정 지 10 일	효 력 정 지 7일	효 력 정 지 10 일	효 력 정 지 7일
	2) <u>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 공안전관 리시스템 등에 대한 중요사항 을 변경한 경우</u>	효 력 정 지 7일	효 력 정 지 10 일	효 력 정 지 10 일	효 력 정 지 7일	효 력 정 지 10 일	효 력 정 지 7일
	다. <u>법 제58조제9 항에 따른 시 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경 우</u>	법 제58 조의 2제1 항제 3호	효 력 정 지 7일	효 력 정 지 10 일	효 력 정 지 10 일	효 력 정 지 7일	효 력 정 지 10 일

현행	개정안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제기준에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자의 항공안전 관리시스템 이행 상 문제점이 확인되면 국가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부적절하게 이행한 것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 개정 법률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승인을 받았거나 이행을 한 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효력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임
- 다만, 현행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2조는 부적절한 SMS 이행에 대한 조치를 서비스제공자별 기존 법령의 처분 조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항공안전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서비스 제공자의 규제변화는 최소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국제기준 정합성 유지 및 현행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내용의 변동은 없음	해당없음
현행유지안	규제 변동 없음	국제기준 미충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	------	------

3. 규제 목표

-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및 국제기준에 따라 SMS 이행상 문제가 확인되면 국가가 행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 까지 취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개정 항공안전법 제58조의2제2항에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 또는 효력정지의 세부기준 등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의 승인취소 및 효력정지 세부기준 등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써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충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일치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행 행정규칙에 있는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피규제 집단의 이행 가능성 또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의 불가피성과 신설되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은 현행 행정규칙상의 규정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행정절차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행정처분 신설에 따라 연계·투입되는 재정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마련은 국제 기준 및 개정된 항공안전법을 따르고, 현행 행정규칙에 있는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피규제 집단의 규제변화는 미미하고, 이행 가능성 또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